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가단10081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희

변론 종결2024. 11. 14.

판결 선고2024. 11. 2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가. D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8. 7. 체결된 매매계약을 151,746,81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51,746,8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2. 7. 주식회사 E으로부터 62,9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2017. 9. 20. 주식회사 E은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주식회사 F에게 양도하였고, 2018. 8. 16. 주식회사 F는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419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1. '피고(D)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97,003,622원 및 그 중 59,773,483원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2023. 12. 22. 기준으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원금 59,773,483원과 이자 91,973,335원 등 합계 151,746,818원이다.

마. 한편, 피고는 1997. 9. 18. D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9. 7. 9. D과 협의이혼하였다.

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D과 피고가 1/2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8. 12.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D 지분)에 관하여 2019.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피고는 2019. 11. 29. G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425,000,000원으로 정하여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2.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D에 대하여 2023. 12. 22. 기준 151,746,818원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인 D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2019. 8.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로서 피고에게 매도하여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사해행위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H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인 2020. 2. 4. 말소되었으므로,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151,746,81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51,746,81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내용

- 1) D과 피고가 2019. 7. 9. 협의이혼하면서 그 재산분할협의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D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원고가 2018. 8. 16. 주식회사 F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후 원고가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5419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1. 4. 1.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D의 채무초과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80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 을 제18, 19,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I기관, J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D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8. 7. 당시 D이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12,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 K은행 예금 7,142원, L조합 예금 488,033원, 퇴직소득 202,105,110원 등 합계 415,100,285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를 포함한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311,165,495원, 개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17,550,000원 등 합계 328,715,495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 재산분할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참조).

2) 재산분할 대상 재산 가) 피고와 D의 재산분할시 소극재산에 D의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 328,715,495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6, 8, 9, 10, 20, 22, 23, 26, 27, 30,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피고와의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다수의 금융기관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과 게임 등에 돈을 탕진하였고, D의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 328,715,495원의 대부분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한 채무 328,715,495원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또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D의 위 328,715,495원의 채무는 피고와 D의 재산분할시 소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나)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9호증, 을 제11 내지 21호증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이 협의이혼한 2019. 7. 9. 당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	212,500,000	258,255,063
자동차(티볼리)	12,832,600			
K은행 예금	32,922,250			
M은행 예금	213			
소극재산	H 대출금 채무	282,000,000	440,508,810	
C 차용금 채무	56,568,810			
N 차용금 채무	35,700,000			

피고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	212,500,000	258,255,063
O 차용금 채무	10,000,000			
P 차용금 채무	4,280,000			
Q 차용금 채무	1,100,000			
D	적극재산	R 대출금 채무	50,860,000	415,100,285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	212,500,000			
K은행 예금	7,142			
L조합 예금	488,033			
퇴직 소득	202,105,110			
	소극재산	0	0	

3) 재산분할협의의 상당성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D과 피고가 199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과 피고의 이혼에 따른 적정한 재산분할의 비율은 D 50%, 피고 50%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피고와 D의 부부공동 순재산

232,846,538원 $[(258,255,063 + 415,100,285) - (440,508,810 + 0\text{원})]$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으로 116,423,269원 $(=232,846,538\text{원} \times 1/2)$ 을 분할받는 것이 상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넘겨받음으로써 결국 피고가 30,246,253원 $[(\text{피고의 적극재산 } 258,255,063\text{원} - \text{피고의 소극재산 } 440,508,810\text{원}) + \text{이 사건 아파트의 } 1/2 \text{ 지분 가액 } 212,500,000\text{원}]$ 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받게 된 것인바, 피고가 재산분할로 받은 위 30,246,253원은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116,423,269원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넘겨받은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백웅철

별지